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영종대교 통과 가능높이 신고 철저 협조 요청

1. 귀 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창원 거가대교-해상크레인, 중국 광저우 컨테이너선-교량 추돌사고와 같이 교량과 선박 간 추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수면상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선박이 영종대교를 통과하려는 경우, 경인항 관제구역에 진입할 때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를 해상교통관제센터(VHF 채널 0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의무 위반 시 선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에 따른 영종대교 수면상 높이(35미터) 및 경인아라뱃길 교량 선박통항 가능 높이(약 16미터)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5. 귀 사(회)가 소유·관리하거나 도선하는 선박 또는 귀 사가 운영하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운항자가 상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천·경인항 해상교량 통과 신고 및 높이 관련 규정 1부, 끝.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신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인천항도선사회, 인천항 및 경인항 항만관리사무소, 두운영사



시설행정팀장 이현석

센터장

2024. 2. 23.
홍석인

협조자

시행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507 (2024.02.23)

접수

우 22850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남로 95, 아라서해감분 7층 (오류동) / <http://www.kcg.go.kr>

전화번호 032-728-8252

팩스번호 032-728-8452

/ tommy2076@korea.kr

/ 대국민 공개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9. 1.] [해양경찰청고시 제2023-11호, 2023. 9. 1., 일부개정]

해양경찰청(해상교통관제과), 032-835-2685

제7조(진입·진출 신고 등)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하선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관제통신을 해야 한다. 다만, 예선이 다른 선박의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제통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하선하는 경우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와의 관제통신을 도선사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려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별표 2)

관제대상선박 이동 및 도선사 승선·하선 관제통신 방법(제7조제1항 관련)

1.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관제통신 시점	관제통신 내용
가. 이동 10분 전	1) 선박명 2) 이동예정 시각 3) 출발지·목적지 4)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50미터 이상인 선박이 인천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30미터 이상인 선박이 영종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다. 수면상 최고높이가 62미터 이상인 선박이 서해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나. 이동을 시작할 때	1) 선박명 2) 호출부호 3) 이동 시작 시각 4) 출발지·목적지
다. 이동을 완료하였을 때	1) 선박명 2) 호출부호 3) 이동 완료 시각·장소

2. 관제대상선박에 도선사가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경우

관제통신 시점	관제통신 내용
가. 도선사가 승선할 때	1) 선박명 2) 도선사 성명 또는 약호 3) 승선 시각·장소 4) 목적지 5)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가. 수면상 최고높이가 50미터 이상인 선박이 인천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나. 수면상 최고높이가 30미터 이상인 선박이 영종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다. 수면상 최고높이가 62미터 이상인 선박이 서해대교를 통과할 예정일 경우 라.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나. 도선사가 하선할 때	1) 선박명 2) 하선 시각·장소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별표 3]

선박교통관제구역 별 관제대상선박 신고 방법(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신고시점		신고내용
경인항 구역	진입 신고	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진입할 때	1) 선박명 2) 통과위치 3) 입항예정 시각·장소 4) 갑문 도착예정 시각 5) 수면상 최고 높이(영종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높이가 3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6)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나. 입항하였을 때	1) 선박명 2) 호출부호 3) 입항 시각·장소 4)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진출 신고	가. 출항하기 10분 전	1) 선박명 2) 출항예정 시각·장소 3) 목적지 4) 수면상 최고 높이(영종대교를 통과하는 수면상 최고높이가 30미터 이상 선박만 해당) 5)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나. 출항하였을 때	1) 선박명 2) 호출부호 3) 출항 시각 4)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인천항 · 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시행 2024. 1. 3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4-8호, 2024. 1. 30.,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032-880-6494

제10조(통항제한) ① 모든 선박은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를 통과할 때에는 다음의 항로 폭이 및 수면 상 높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구분	인천대교		영종대교
	주경간	측경간	
항로폭(미터)	625.5	140	200
수면 상 높이(미터)	66	59	35

② 모든 선박은 경인항 갑문을 통과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통항여건을 고려하여 항행해야 한다.

1. 아라서해갑문: 최대폭 28.5미터, 통과허용 선박 폭 26미터
2. 아라한강갑문: 최대폭 22미터, 통과허용 선박 폭 20미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통과 선박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풍랑주의보 이상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계가 500미터 이하로 불량하여 해양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구조물의 수면 상 최고 높이가 높거나 규모가 커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선박이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천대교 부근을 통항하려는 경우

제17조(통항제한) ① 모든 선박의 선장은 경인아라뱃길을 항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통항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고 항행해야 한다. 다만, 수심 및 다리의 선박통항가능 높이는 강수량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항행여건을 확인하고 통항해야 한다.

1. 수심: 약 6.3미터(인천평균해면상 2.7미터 상방 기준)
2. 다리의 선박통항 가능 높이: 약 16미터(인천평균해면상 3.5미터 상방 기준)